

인천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707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7073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1655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박경석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하희진

변론 종결 2021. 3. 31.

판결 선고 2021. 4.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16557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3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72,772,5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772,516원, 원고 B에게 2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3항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다음으로 원고 B의 채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1, 2, 3,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5. 3. 2. 1,000만 원, 2015. 3. 31. 500만 원, 2015. 4. 25.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 B은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D은 경찰조사에서 '원고 B로부터 2015. 3. 2.경 동생 심장 수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렸고, 2015. 3. 31. 빌라 투자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일이 끝나기 전에 잠적하여 끝맺지 못하였으며, 2015. 4. 25.자 1,000만 원은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원고 B과 함께 하던 계에서 미리 갯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D은 위 경찰조사에서

원고 B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돈에 대한 변제 내지 반환의무에 대해 다투지 않은 채 전부 갚았는지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위 각 돈의 변제 내지 반환을 전제로 원고 B로부터 이를 송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은 D에 대하여 합계 2,5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내지 투자금반환채권이 있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을 "당심 변론종결 무렵"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민호

판사김범진

판사김현

별지